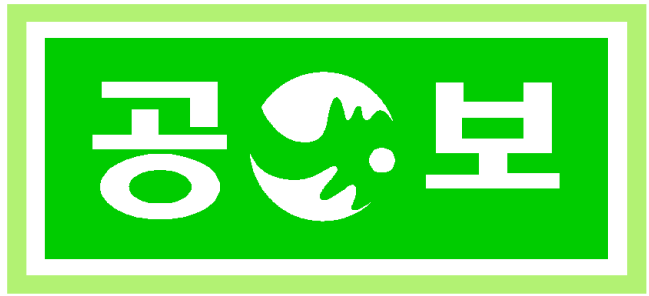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람	기 관 의 장



제 1056 호 2017. 3. 9. (목)

조 례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964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965호[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4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966호[울산광역시 북구 참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6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967호[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0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46호[소하천 준공인가 고시] 1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47호[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 고시] 15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48호[도로명주소 고시] 16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49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18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322호[울산광역시 북구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공개 공고] 1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340호[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종이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 공문을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행정정보→알림마당→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2017년 3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96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
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
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최근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해 비판 여론 등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권고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2762호, '16.9.9.)함에 따라 공소 제기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구금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규정 신설(제4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2017년 3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965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체육시설 사용 허가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추첨기준에 따라 결정함으로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기함.

2. 주요내용

- 사용허가 심의위원회 설치 조항 삭제(제6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2017년 3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966호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순직군경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4호(중진의 제3호) 중 “전몰군경 유족”을 “전몰군경 유족 및 순직군경 유족”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을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 및 순직군경 유족(이하 “참전유공자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을 “참전유공자 등”으로 하고 “월 5만원”을 “월 6만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매분기말 다음달 25일”을 “매분기말 25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전유공자 등의 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호의 개정규

정은 2017년 1월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유족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전몰군경 <input type="checkbox"/> 순직군경		유족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 소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국가보훈 대상자	성 명				대상자와의 관계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 번호						
개인정보 취급	<input type="checkbox"/>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p>「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몰(순직)군경 유족 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p>							
※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유족 확인원 1부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제철용종)]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에서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던 것을 순직군경 유족에게까지 확대지급하며,
-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6.12.15.)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1만원 인상) 의결됨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함.

2. 주요내용

-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서 순직군경 유족까지 확대(제3조)
- 명예수당 지원사업 중 명예수당 월 5만원에서 월 6만원(1만원 인상),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순직군경 유족까지 확대(제4조, 제6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2017년 3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967호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수급과 적극적인 헌혈권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헌혈권장사업”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 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현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 2. 현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3. 현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현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후관리) 구청장은 해당연도의 현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 및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현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현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현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게 「울산광역시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 할 수 있다.

제7조(현혈장소의 설치 지원)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총제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인시 현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복구청 등 공공장소
- 2. 그 밖에 현혈하기에 적합한 장소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현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 권장 활동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헌혈 장려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제1조 ~ 제3조)
-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사후 관리,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제4조 ~ 제7조)
- 비밀준수의 의무, 시행규칙(제8조 ~ 제9조)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7-46호

소하천 준공인가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소하천공사 준공인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소하천정비 개요

가. 소하천등 정비의 명칭 및 시행 위치 : 수지천 (산하동 산35-2번지 외 4필지)

나. 착공 및 준공 연월일

착공 : 2016. 02. 18.

준공 : 2017. 02.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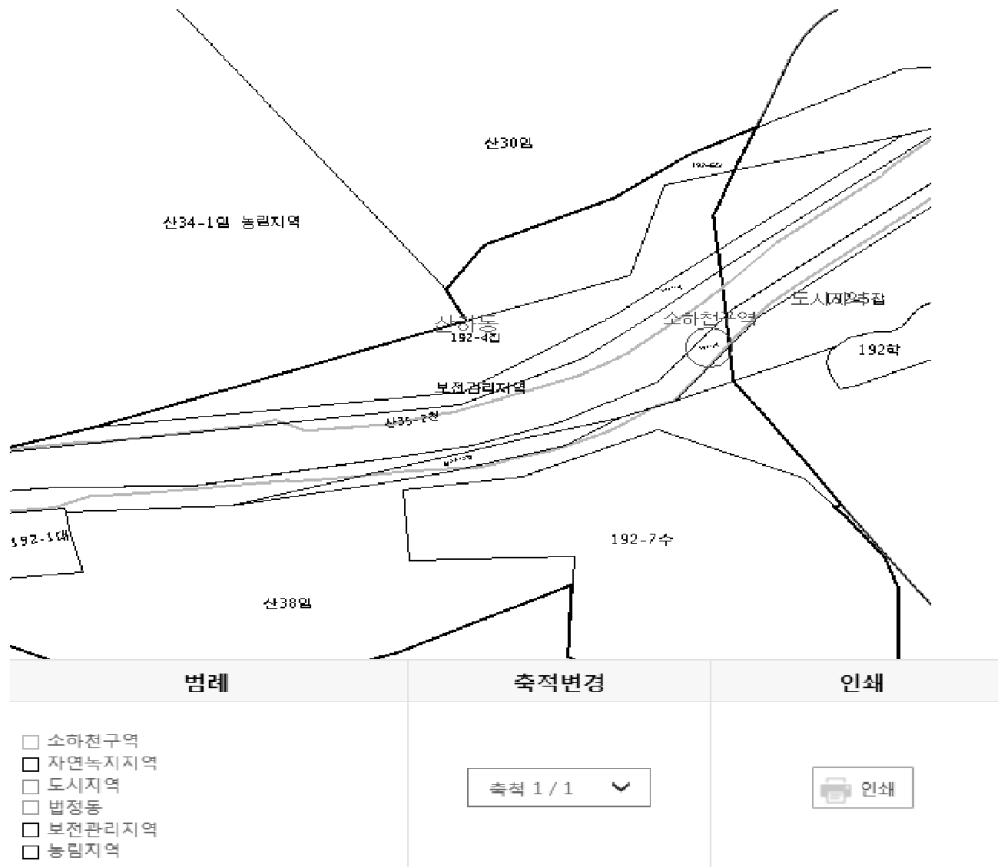
2. 소하천등 정비 시행자의 명칭

세한종합건설(주) 이동일

3. 소하천등 정비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점용면적(㎡)	비고
복구 산하동	산35-4	천	905	47	
	산35-2	천	15,302	109	
	산35-5	제	1,691	43	
	산38	임	251,445	0	
	산38-3	제	190	8	
계			269,533	207	

4. 해당 소하천구역의 지형도면으로서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5. 그 밖에 준공된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가. 집중호우 예상 시, 현장 위험요소 제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예방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 하여야 합니다.

나. 본 허가에 따른 구조물은 허가목적(농경지 진입을 위한 진입로)으로만 사용가능하며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 하천개수를 위한 하천공사 및 도로확장공사 등 국가계획 및 공익상 필요하거나 관계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 시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공작물의 이설 또는 철거가 요구될 경우 피허가자 부담으로 이설 또는 철거해야 하고 이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라. 그 외 사항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7-47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고시내역

허가 년월일	허가 번호	피허가자		취용장소	면적 (㎡)	허가기간	취용목적	비 고
		주 소	성 명					
2017. 03.06.	2017 -1	울산광역시 복구 정자동 639	김윤곤	울산광역시 복구 정자동1길 66번지 일원	3.5	2017. 3. 6. ~ 2020.12.30.	해수인수용 관로매설	조건부 허 가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7 - 48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화동15길 33(화봉동) 외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3. 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회봉동 1452-9	울산광역시 북구 회봉15길 33(회봉동)	201703-09	회동은 회봉의 옛 지명이며 산세가 검검이 늘어선 곳에 자리한 마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10-04-27	
2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영촌지구 428 2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24길 31(진장동)	201703-09	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3	울산광역시 북구 신전동 321-16외 2필지(321-22,321-24)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2길 9-8(신전동)	201703-09	기존 자연마을인 제내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4	울산광역시 북구 신전동 306외 5필지(307-3,308-2,321-7,321-13,321-14)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2길 9-6(신전동)	201703-09	기존 자연마을인 제내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5	울산광역시 북구 호수지구 138 2L	울산광역시 북구 수동5길 3(호계동)	201703-09	수동마을명칭을 사용하면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13-12-30	
6	울산광역시 북구 호수지구 78 12L	울산광역시 북구 수동4길 14-3(호계동)	201703-09	수동마을명칭을 사용하면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13-12-30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49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24길 31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42B 2L	2017. 3. 9.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3. 9.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7 - 322호

울산광역시 복구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공개

「울산광역시 복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구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협력사업비 : 금일억오천만원(금150,000,000원)
2. 출연기간 : 2017. 1. 1. ~ 2019. 12. 31.(3년)
3. 출연기관 : NH농협은행(울산영업본부)
4. 예산편성 : 일반회계 세입예산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 - 340 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사용허가 심의 위원회 설치)가 삭제 개정됨에 따라
- 관련 시행규칙 조항을 개정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운동시설 이용 허가 대상자를 결정하고 시설사용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기존 위원회 설치 및 심의의결 조항 삭제(제4조, 제5조)
- 사용허가 우선순위 제외, 접수순 사용허가 조항 신설(안 제3조)
-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조항 변경(안 제4조)

3.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4. 입법문안 및 규칙 전문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052-241-7345, 팩스번호 : 052-241-733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복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복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① 「울산광역시 복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행사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 시간은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근무시간 내로 한다.

제3조(사용허가)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제4조의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제외하고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 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우선순위 동일 순위자가 둘 이상 경합 시에는 행사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
2. 체육진흥 및 주민화합을 위해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 각 호의 경우 구청장은 사용 허가기간 중이라도 허가사항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징수) ① 사용료는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을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즉시 구청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초과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별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감면사유를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반환) ①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 취소원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절차는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예고 및 허가결정 통지방법) ① 조례 제5조의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고 및 허가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사용신청·절차 및 개방제한 사항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운영기간·종류·이용방법 등
3. 사용자명, 사용시설, 사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등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신청·허가·사용료에 대한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사 용 조 건

1. 인조잔디축구장내에는 술·음료 및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으며, 취식 및 취사행위를 할 수 없다.
2. 인조잔디축구장은 축구경기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축구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3. 인조잔디축구장내에서는 껌을 씹거나 흡연을 할 수 없으며, 화기류를 휴대하거나 애완동물을 데리고 들어갈 수 없다.
4.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체육시설내 시설물 및 기타 물건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인명 및 각종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사용자가 발생시킨 쓰레기는 사용종료와 동시 완전 수거하여 사용자가 퇴가져 가야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무단 투기하였을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7. 허가 기간중이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행사 또는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8. 위 사용조건을 2회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사용을 6월에 한하여 사용허가를 제한하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한다.

사 용 료 반 환 범 위

1.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어 일시사용 정지를 받은 후 정지된 시
일만큼 연장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전액반환
3. 천재지변 또는 우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